

'96공유재산관리계획 (안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95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

2. 주요골자

— 취득. 처분. 교환 —

[재산의 취득]

- 잠업검사소. 종축장청사 및 부대시설 신축
 - . 통합청사 신축
 -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2-7 번지 1,653㎡
 - . 부대시설 신축 2,248㎡
- 종축사료포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신축
 - . 사료포 부지매입
 -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05 번지의22필지 39,110㎡
 - . 축사 및 부대시설 신축
 -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132-7 번지의12필지 3,967㎡

- 음성소방서부지 기부채납 및 청사신축
 - . 부지 기부채납
 -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1-2번지의외6필지 3,570㎡
 - . 청사신축 2,640㎡
- 영동황간소방파출소부지 기부채납 및 청사신축
 - . 부지 기부채납
 -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262-7번지 1,554㎡
 - . 청사신축 495㎡
-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부지 매입 4,960㎡

[재산의 처분]

- 농촌진흥원 잔여재산 매각
 - .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56번지의외 52필지 92,941㎡

[재산의 교환]

- 교환취득
 - .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13 번지 4,863㎡
- 교환처분
 - .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439-3번지의외 4필지 5,969㎡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6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「별첨」

5. 관계법령발췌 : 「별첨」